



# 국가인권위원회공보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8월 15일

제 19권 제 4호

## 알 립

- 국가인권위원회공보는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들의 이름, 소속기관, 주소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까지 발간된 공보는 그 전문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

### 공 지 사 항

1	인사발령 등 .....	939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 .....	941
3	진정접수 · 상담 · 민원 · 안내 처리 현황 .....	948
4	진정사건 처리 현황 .....	950

**법령·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

- 1** 2021. 6. 10.자 결정 21정책0018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 959
-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
- 【1】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상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
- 【2】 관련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와 취업 허가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인도적체류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기 바람.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 1** 2021. 1. 27.자 결정 20진정0458000 【코로나 자기격리지침 위반 개인영상정보 유출 등】 ..... 992
-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 2** 2021. 1. 27.자 결정 20진정0537700 【군수의 부당한 지시 등에 따른 인권침해】 ..... 1004
-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3** 2021. 4. 16.자 결정 19진정0929902·21진정0180700(병합)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에 따른 인권침해】 ..... 1019
- 【1】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 【2】 ○○○○시장에게,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관경고할 것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보완 조치할 것을 권고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

**4** 2021. 5. 17.자 결정 21진정0243700 【사회복지사의 장애인에 대한 폭언 등】 ..... 1042

- 【1】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을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6호 위반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
- 【2】 ○○시장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절차를 마련할 것과 향후 유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3】 ○○시장에게, ○○시장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 행위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권고

**5** 2021. 5. 17.자 결정 21진정0082400 【물건을 훔친 이유로 인한 부당한 격리】 ..... 1054

피진정인에게, 환자에 대한 격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정확히 기재할 것, 향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6** 2021. 5. 17.자 결정 21진정0839400 【격리실에서의 부당한 용변처리 등】 ..... 1064

- 【1】 피진정인 1에게, 환자들이 격리실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 및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관할 지자체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7** 2021. 6. 4.자 결정 20진정0870900 【학교의 복직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 1076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게, 피진정인 1과 3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유사한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8** 2021. 6. 21.자 결정 21진정0449100 【정신병원 보호사의 환자에 대한 폭행 등】 ..... 1094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격리 및 강박은 의료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훈련된 인력이 안전하게 시행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9** 2021. 6. 21.자 결정 21진정0867100 【정신병원장의 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 강박 등】 ..... 1102

△△△병원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5조에 따라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보존할 것을 권고

**10** 2021. 6. 21.자 결정 21진정0072700 【중증지적장애인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113

- 【1】 피진정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발적이고 명확한 자기 의사 없이 임의로 자의·동의입원처리 되거나 퇴원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에 의사·판단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중증 지적장애인이 임의로 자의·동의입원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의 퇴원신청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입원 연장된 사례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84조(벌칙) 제2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

**11** 2021. 6. 21.자 결정 21진정0816400 【입원적합성심사 결과 미통지로 인한 인권침해】 ..... 1124

- 【1】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47조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 결과를 환자들에게 통지하고,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차별행위 조사결정**

- 1** 2021. 5. 20.자 결정 20진정0377300 【사립대학교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 1135

피진정인 ○○○학원 이사장에게, 수당지급에 있어서 진정인과 정년전임교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 2** 2021. 5. 20.자 결정 20진정0251200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은행창구업무 이용 배제】 ..... 1145

피진정인 B은행장과 C은행장에게, 외국인 고객에 대한 다양한 거소 확인방법이 포함된 업무처리지침이 해당 은행의 각 지점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 3** 2021. 6. 29.자 결정 21진정0043600 【학력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 ..... 1156

피진정인 ○○○○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일한 채용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호봉 체계 및 기본급 산정을 달리 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 4** 2021. 6. 29.자 결정 21진정0086700 【직원상담원 자격증 관련 수당지급 차별】 ..... 1168

피진정인 ○○○○시장에게,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원 중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동등하게 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
- 5** 2021. 6. 29.자 결정 21진정0246800 【고용센터 위탁기관의 나이를 이유로 한 수강제한】 ..... 1179

피진정인 ○○○○직업전문학교 이사장에게, 향후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진정인이 교육훈련 신청 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
- 6** 2021. 6. 29.자 결정 21진정0118800 【기초자치단체6급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민원수당 지급차별】 ..... 1189

피진정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 임기제 6급공무원에 대해 대민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

**7** 2021. 6. 29.자 결정 19진정0862400 【외국인강사에게만 고학력을 요구하는 학원강사 자격기준 차별】 ..... 1196

피진정인 교육부장관에게, 동종·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3]을 개정할 것을 권고

**8** 2021. 6. 29.자 결정 21진정0050100·21진정0067600(병합)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군 복무경력 불인정 등】 ..... 1204

피진정인 □□□□□□사장에게, 운영지원직 직원들의 호봉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인권도서관 신착자료**

**1** 국내서 단행본 ..... 1218